

「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발 의 자: 김영길 · 김민성 · 김영태 · 박세채 · 안주찬 ·
이상호 · 장세구 · 정지원 · 추은희 의원(9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환수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-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, 제10조의4
 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
 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4조, 제8조, 제10조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첫만남이용권,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「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‘첫만남이용권’과 ‘출산축하금’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, 해당 사업들을 「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산후조리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,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, 「사회보장

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됨.

- 또한, 조례안에 지원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도비 등의 추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지원금은 규칙을 통해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, 구미시민의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구미시는 출생인구 감소 추세에 있으며, 이에 대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.
-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2024년 1월 1일로 하여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.
- 구미시 출산축하금의 상향조정 방안 검토 필요.
- 집행기관에서는 저출생과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출산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.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